

[별표 2]

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(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)

| 자 산 범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산 명             | 내용연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<br>실험연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)건물부속 설비        | 5년   |
| 2.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<br>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<br>시설             | (2)건축물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3)기계장치           |      |
| 3.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,<br>원형,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,<br>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| (4)광학기기           | 3년   |
| 4.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, 기구,<br>금형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<br>한 시설          | (5)시험기기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6)측정기기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7)공구             |      |
| 5. 직업훈련용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기타 시험연구용<br>설비 |      |

1.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 
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  
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.
2.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
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 
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  
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